

5 편

제1장

여권법



제1절 총칙

1. 여권법의 목적과 발급권자 등

1) 여권법의 목적

이 법은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3) 발급권자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2.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1) 여권법의 종류

- ①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으로 하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여권법의 규격 등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일반여권: 녹색(단수여권은 12면, 복수여권은 24면 또는 48면), 다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4면으로 하고,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은 14면으로 한다
- ② 관용여권: 황갈색(24면 또는 48면)
- ③ 외교관여권: 남색(24면 또는 48면)
- ④ 여행증명서: 연청색(8면). 다만 사진부착식 여행증명서는 10면으로 한다



3) 여권의 유효기간

- ① 일반여권 : 10년 이내
- ② 관용여권 : 5년 이내
- ③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3. 단수여권의 발급

-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 ㉡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된 사람에게 인도적 사유가 있는 때,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하게 하는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 발급하는 경우
 - ㉣ 여권의 분실경위 등을 확인하는 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제2절 여권 등

1.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 ①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 ㉡ 2.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단수여권의 발급
 - ㉡ 여행증명서 발급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의학적 이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사람
 - ㉡ 18세 미만인 사람
 - ㉢ 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 18세 미만인 사람



2)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외교부장관은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3) 여권의 발급신청

- 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인이 제공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2. 일반여권의 발급

-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1) 18세 미만인 사람: 5년
 - (2)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복무·의무종사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의무종사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을 발급받는 해에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만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①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 ② 사증(VISA)의 취득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3) 25세 이상으로 제1국민역,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복무·의무종사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의무종사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의무종사 중인 사람: 5년
 - ②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보충역으로서 복무·의무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 (4)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 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 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 ②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 ③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 (7)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3. 거주여권의 발급

-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대해서는 일반여권 중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추가로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해외이주 신고를 한 사람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갈음하는 장기체류사증)이나 이민사증
 - ㉡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혼인관계증명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관용여권의 발급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 공무원
 - ㉡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또는 직원
- ②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국외 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③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④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⑤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 ⑥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외교관여권의 발급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①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대통령

㉡ 국무총리



- (2)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①외교부장관
 - ②특명전권대사
 - ③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 ④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 ⑤「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 (3)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외교부장관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4)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2) 전직 국회의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2)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 ⑤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여행증명서

1) 여행증명서의 발급

- ①외교부장관은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②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2)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 ①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 ②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 ③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국가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④ 해외 입양자
- 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⑥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여권의 재발급

- 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여권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 발급받은 여권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②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8.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수록정보인 ①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②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을 제외한 사증란의 추가, 구 여권번호의 기재 등을 위하여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여권발급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9. 여권 등의 발급 거부·제한 등

1) 여권등의 발급 거부·제한 사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 ②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자, 이를 알선한 자
 - ㉡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양도받거나 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
 - ㉢ 다른 사람의 여권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 ③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④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2) 한시적 여권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등)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 ②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3) 인도적 사유에 의한 여권 등의 발급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① 배우자
- ②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③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10. 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②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 ③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④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 ⑤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11. 여권 등의 사용제한 등

1) 여권 등의 사용제한 등의 사유

- ①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②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③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④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⑤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⑥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2) 여권 등의 사용제한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①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 ②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③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 ④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여권 등의 사용제한 해제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 여권 등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외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6)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외교부장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여권의 수령방법

여권은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여권발급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한편,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3. 여권의 효력상실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①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 ②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 ③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
- ④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 ⑤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 ⑥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 ⑦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
- ⑧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 ⑨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14. 여권 등의 반납 등

1) 여권 등의 반납

(1) 여권 등의 반납 명령에 의한 반납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①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발급 및 재발급 거부사유(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밝혀진 경우
- ②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발급 및 재발급 거부사유(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③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여권 등이 발급된 경우

(2) 새로운 여권 등의 발급에 의한 반납

여권수록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또는 발급받은 여권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새로운 여권 등을 재발급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3) 여권 등의 명의인의 요청에 의한 보존

여권 등의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하여야 할 여권 등을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그 여권 등에 소인(消印)하여 이를 그 여권 등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2) 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법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여권 등의 반납명령에 의한 반납(법 제19조제1항)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 ①외교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 ②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 ③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제3절 행정상의 지도·감독 및 제재

1. 행정상의 지도·감독

'여권발급 등'의 사무대행자인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여권 등의 발급권자'는 그 권한의 행사현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여권 등의 발급권자'가 대행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대행사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변경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형벌에 의한 제재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당자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당자

①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②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당자

①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②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③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5 편

제1장

여권법